

시민사회 연합 보고서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

June 2024

Contact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hbchoi@thekdf.org)

김진 사단법인두루 (jkim@duroo.org)

제출 단체(가나다순)

난민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두루,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법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발리더티재단

목차

시민사회 연합 보고서.....	0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0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	0
서문.....	2
a. 배경.....	2
b. 고문방지협약과 차별적 시설 수용.....	3
A. 정신장애인 시설 수용.....	7
a.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7
b. 심리사회적장애인 탈원(시설)화 로드맵과 지역사회 서비스 부재.....	9
B. 장애인 시설수용.....	14
a.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고문 및 학대.....	14
b. 지역사회 제도 미비와 시설 수용 확대: 사실상의 강제 입소.....	19
c. 긴급 상황에서의 고문/학대: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사례.....	22
d. 젠더폭력 피해 장애여성.....	23
C. 아동·청소년 탈시설.....	25
a. 시설보호아동의 인권 침해.....	25
b. 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및 약물 처방 오남용 문제.....	26
c. ‘탈시설’에 역행하는 자유박탈 실태.....	28
d.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시설화 강요 등 비인도적 처우.....	30
D. 이주민 시설 수용.....	33
a. 이주 구금.....	33
b. 출입국항에서의 구금.....	37

서문

a. 배경

1. 고문방지협약이 장애, 연령, 국적 등의 차별에 기반한 시설 수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시설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시설 정책의 부재와 지역사회 제도의 미비는 시설 입소 과정과 시설 내부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2.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입원 과정 및 시설 내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사실상 장기적인 거주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입원이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침해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50%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방임하고 있다. 2022년 한국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도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들은 여전히 폭력 속에 방치되고 있으며, 특히 젠더 폭력 피해 장애여성들은 심각한 지원 결핍으로 인해 쉼터에서 나오지 못해 결국 시설 수용화 되고 있다.
3. 보호대상아동 또한 70% 이상이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되는 등 시설 중심의 보호조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시설 보호 아동은 96.6%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시설에서는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부적절한 양육환경에의 노출, 불합리한 생활규칙 강요 등 다양한 인권침해 실태가 확인되며, 소위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거나 약물복용을 남용하는 등의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4. 미등록 외국인의 구금 역시 마찬가지로, 무기한 구금 및 독립된 주체의 판단 절차 부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새우깍기 고문 사건에 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금의 대안 등 시설 수용 외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와 출입국항에서는 외국인이 다른 대안 없이 장기간 구금되고 있다.
5.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계획’,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있는 탈시설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된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고, 정부가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은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으로 수정되어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으며, 2024년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은 구금의 상한을 최장 36개월로 제시하는 등 시설 수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기준에 미달된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6. 협약 및 위원회는 고문, 그 밖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를 강조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추가로 선택의정서를 마련할 정도로 국가에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 왔다. 이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시설 중심 정책을 확인하여 정부에 적절한 권고를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시설 수용이 장애, 연령, 인종 및 이주자 신분 등 지위와 특성에 따른 차별에 기초한 행위이며, 고문 및 학대 행위임을 인식, 시설 수용 정책을 중단하고 시설 수용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를 바라며, 합리적 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반영하여 모든 유형의 시설에 대한 ‘탈시설 로드맵’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b. 고문방지협약과 차별적 시설 수용

7. 시설 수용은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다.
8.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 장애, 연령,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기반하여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9.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제1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바, 즉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고 (...) 장애의 존재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또한 CRPD 제19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 권리를 완전히 누리며 지역사회에 완전히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와 어디서 누구와 함께 거주할 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갖고, 특정한 거주형태에 살 것을 강요받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1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CRPD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통하여 실제적 및 인지된 손상/장애(impairment)을 이유로 하는 시설화/강제 배치를 절대적으로(absolute) 금지하는 것을 일관되게 뒷받침해 왔다. 이러한 유권적

해석에는 최종견해¹, 일반논평², 가이드라인³ 및 개인통보를 통해 채택된 견해⁴들이 포함된다.

11.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CRPD 위원회는 시설화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자, 사실상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시설화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이다⁵.
12. 장애 관련 구금이 이뤄지는 시설은 일반적으로 사회 보호 기관, 정신병원, 장기입원병원, 요양원, 치매병동, 특수기숙학교, 지역사회 기반이 아닌 재활센터, 중간 홈, 그룹홈, 어린이를 위한 가족형 홈, 쉼터 및 보호거주홈, 법의학 정신시설, 전환홈(체험홈)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⁶.
13. 유엔 고문방지협약(이하 'CAT') 제1조 1항에 명시된 고문의 정의에 따르면, 고문의 성립을 위하여는 (i) 극심한 고통 또는 피해(**severe pain or suffering**), (ii) 고의, (iii) 목적, (iv)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의 개입 등 최소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⁷. CAT의 고문 정의(**definition**)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이유로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CAT 제1조의 고의 요건은 젠더, 장애, 연령,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당하는 경우를 유효하게 함축할 수 있다. 순전히 부주의한 행위는 CAT 제1조에서 요구하는 고의성을 결여하며, 따라서 그것이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가혹행위(**ill-treatment**)에 해당할 수 있다⁸.
14. 전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인 맨프레드 노박에 따르면, 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자행되는 고문 및 가혹행위의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은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정신보건기관 등의 시설에서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거나 자유롭게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장기간 자유를 박탈당하며, 이러한 일들을 평생에 걸쳐 경험한다. 이처럼 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욕, 방치,

¹ See e.g. CRPD/C/KOR/CO/1, paras 26 and 38.

² CRPD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1 on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CRPD/C/GC/1, paras 40, 41 and 46. CRPD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5 on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CRPD/C/GC/5 (2017) paras include 49, 51.

³ CRPD Committee, Guidelines on article 14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72/55, Annex, para. 8. CRPD Committee,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 (2022) para 7.

⁴ See e.g. CRPD Committee, Marlon James Noble v. Australia CRPD/C/16/D/7/2012 (2016) para 8.7.

⁵ CRPD Committee,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 CRPD/C/5 (2022) para 6.

⁶ Ibid, para 15.

⁷ Manfred Nowak,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anfred Nowak, Addendum. Study on the phenomena of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the world, including an assessment of conditions of detention' A/HRC/13/39/Add.5 (5 February 2010) para 30.

⁸ Ibid, para 49.

심각한 형태의 감금과 격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에 빈번히 노출된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관행들이 장애인에게 가해질 경우 이러한 문제 상당 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거나 정당화되고 있으며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 인식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⁹”

15.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하는 시설 내 거주인에 대한 보이지 않거나 잘못 정당화되는 이러한 관행에는 강제 불임, 강제 낙태, 강제 투약, 신체적, 화학적, 기계적 구속, 감방이나 철창에의 구금 또는 기타 형태의 자유 박탈이 포함된다. 전기 경련 치료, 격리 및 고립, 신체적 및 심리적 폭력, 심각한 방임, 열악한 환경에서의 구금, 기본적 및 긴급한 필요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인신매매 및 강제 노역, 성적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여러 교차적 형태의 학대 또한 포함된다¹⁰.
16. 이러한 관행은 시설 수용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 즉 일부 의료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사전 동의권 침해 관행, 지역사회에서 자립과 통합을 촉진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개혁 프로그램의 실패, 후견인 제도와 같은 법적 장벽, 사법 접근성 장벽('심신 건전성' 등의 개념을 전제로 한),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편견, 한정 책임 체계,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압적이고 의료화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국내 및 국제적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7. 증거에 따르면 '소규모 그룹홈'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의 시설이며 여전히 자유를 박탈하는 장소로서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아동, 이주민에 대한 고문과 학대의 온상이다¹¹.
18. 또한, 시설적 보호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 거주자들의 기본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일례로, 시설 보호 모델 자체가 장애인의 고문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¹².
19. 그러나 설령 소규모 그룹홈의 특정 요인들이 기존 형태의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인도적이거나 덜 가혹하다고 옹호되더라도, 고문은 일부 특정한 기술이나 환경의

⁹ Ibid, paras 38 and 41.

¹⁰ See e.g. CRPD/C/ETH/CO/1, para. 34; CRPD/C/CHL/CO/1, para. 34; CRPD/C/SRB/CO/1, para 28.

¹¹ See e.g. Validity Foundation - Mental Disability Advocacy Centre & Network of Independent Experts - NIE, 'Poor her, for having dreams. Monitoring report on Torture and Ill-treat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Bulgarian Institutions, Including Small Group Homes (2024). Available at: <https://validity.ngo/wp-content/uploads/2024/04/20240411-BG-Monitoring-Report-EN-1.pdf>

¹² Ibid. See also, Nadezhda Toteva Deneva et al., 'Deinstitutionalisation and Life in the Community in Bulgaria. A Three-Dimensional Illusion' (Validity Foundation, 2021). Available at <https://validity.ngo/wp-content/uploads/2021/09/Deinstitutionalisation-and-Life-in-the-Community-in-Bulgaria-FINAL.pdf>.

특성에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외부적 압박의 요인이나 개인이 처한 취약성과 결합하여 누적적이고 장기적으로 발휘되는 영향 속에서 식별될 수 있다¹³. 최근 많은 국가에서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며 포장되고 있는 소규모 그룹홈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사람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기회를 재차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고문적 환경의 연장 또는 축적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소규모 그룹홈이 더 '인도적'이거나 '가족 같은' 환경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다¹⁴. 달리 말해, 정부의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 그룹홈이 확대되고 이들 소규모 그룹홈에 기존의 거주인들을 다시 배치하는 관행은 또 다른 형태의 고문적 시설화/시설적 고문이 누적되는 것일 뿐이다.

¹³ Nils Melzer,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ils Melzer, A/HRC/43/49 (20 March 2020) para.68.

¹⁴ "rather than looking at each factor in isolation and asking which ones cross the "severity" threshold, it is more appropriate to speak of a "torturous environment", that is to say, a combination of circumstances and/or practices designed or of a nature, as a whole, to intentionally inflict pain or suffering of sufficient severity to achieve the desired torturous purpose.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victims tend to experience and respond to torture holistically, and not as a series of isolated techniques and circumstances, each of which may or may not amount to torture." (Ibid, para 70.)

A. 정신장애인 시설 수용

a.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¹⁵

20. 대한민국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은 구금 및 수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원과정과 기관내부에서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하였다.¹⁶ 또한 고문방지협약 일반논평 제2호에서는 ‘고문의 위험에 처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대 행위를 완전히 기소, 처벌하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⁷. 그러나 실질적으로 심리사회적장애인의 비자의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비자의입원 후 발생하는 폐쇄병동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어렵다.

21. 폐쇄병동은 외부와의 출입을 제한하는 병동으로 심리사회적장애인의 자유를 크게 박탈하므로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보호자나 국가에 의해 폐쇄병동 입원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입원 등 강제입원 시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고, 폐쇄병동 내에서 심리사회적장애인은 치료라는 명목으로 면회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병원 내 개인간의 다툼이나 의료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격리강박을 당하기도 한다. 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불법 입·퇴원’이 58.5%로 가장 많고, 2018년 이후 ‘부당한 격리·강박’과 ‘폭언·폭행/가혹행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¹⁸ 또한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과 병동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진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⁹

22.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²⁰을 말하며,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한 입·퇴원 절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과 달리 정신요양시설은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거주시설처럼 운영되고 있다.²¹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보다

¹⁵ UN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9., 대한민국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장애나 지적장애 등 장애를 이유로 자유박탈 조치를 허용하는 현존 법령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¹⁶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2014헌가9 결정

¹⁷ 고문방지위원회, 2008, 일반논평 제2호

¹⁸ 국가인권위원회, 2021,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53p

¹⁹ 국가인권위원회, 2021,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60~63p

²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²¹ 국가인권위원회, 2020. 8. 18.,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조항 폐지돼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요양시설에는 약 8,500여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입소되어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의 장기입소자가 50%를 차지하고 있다.²² 정신질환자가 노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정신요양시설이 후에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정신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은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입소가 62.2%로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1개 숙소 6명 이상 거주 비율이 62.7%로 시설화가 심각하고, 폭력,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24.7%), 강제 격리 조치(21.7%), 강박(12.4%)과 같은 인권침해도 심각하다.²³

사례 1

A씨는 보호입원인줄 알았으나 동의입원이었으며, 동의입원임에도 퇴원을 거부당하였다. 또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당하는 인권침해를 겪었다.²⁴

사례 2

국가인권위원회는 A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진정이 다수 들어오고, 이후 공중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A정신병원에서 전화선을 빼놓는 등 실질적으로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²⁵

사례 3

A정신요양시설은 남녀 170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이 시설 내에서 입소자 간 성폭력이 잇달아 일어났다. 공지사항과 상담일지 등에 성추행을 호소하는 내용이 다수 있으나 시설 관계자는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²⁶

질문

- 1)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및 불법 비자의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추었는가

²² 보건복지부, 2022,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원기간 현황, 국가통계포털

²³ 국가인권위원회, 2018. 5. 10., 비자의 입소 장애인거주시설 67.9%, 정신요양시설 62.2%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방치, 인권침해 노출 비율 높아

²⁴ 국가인권위원회, 2022. 2. 8., 정신의료기관의 처벌 목적 신체강박 및 본인 입원의사 확인 없는 동의입원은 인권침해

²⁵ 국가인권위원회, 2023. 3. 28.,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제한 및 입·퇴원 과정 절차 위반 등 직권조사

²⁶ kbs 뉴스, 2023. 11. 9., 정신요양시설에 무슨 일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4126>

- 2) 정신요양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3) 정신요양시설 탈시설 후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권고

- 1) 동의입원, 보호입원 등 비자의입원제도를 폐지할 것
- 2)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폐쇄병동을 전면 폐쇄하고 개방병동으로 전환할 것
- 3)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전부 폐쇄할 것

b. 심리사회적장애인 탈원(시설)화 로드맵과 지역사회 서비스 부재²⁷²⁸

23. 고문방지협약 일반논평 제3호에 따르면 ‘당사국은 손해배상 및 가능한 완전한 재활수단 등 효과적인 구제와 적절한 배상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되어있다.²⁹ 그러나 대한민국은 심리사회적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것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이들을 위한 탈시설 로드맵 수립과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에 발표한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를 통해 시설수용을 장애인 폭력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며,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하여 장애인을 강제적 의료개입에 처하게 함으로써 CRPD 15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정신건강법 등 협약 제14조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에 의한 모든 구금 및 장애에 의한 비자의 구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양질의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에는 일정과 기준,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겨 있어야 한다.

²⁷ 2019년 4월, UN Human Rights Council은 General Assembly에 제출한 Report에서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권리의 효과적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써 시설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당사국의 지속적인 투자를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체계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낙인화와 차별 및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을 강화시키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시설화 축소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²⁸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2차 및 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권해를 발표하면서, 제15조(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정신적/화학적/기계적 구속 등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자의적 입원과 시설화 관련 모든 법률 조항을 폐지하고 시설화에 대한 명시적 금지를 법률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CRPD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과 관련하여 협약에 부합하는 자립지원 로드맵을 장애인단체와 협의하고 충분한 예산과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²⁹ 고문방지위원회, 2012, 일반논평 제3호

24.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의 실현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장애인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이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 2010년대 이후 탈시설의 성공적인 시도들이 축적되면서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8월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수립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탈시설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과는 별개로 정신질환자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수용하는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심리사회적장애인의 탈원(시설)화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강제적 입원과 입소, 강제적 약물치료, 격리·강박 등 비자의적 자유 박탈의 금지와 함께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및 권익옹호를 포함하는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개인적 욕구에 맞추어 적절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탈원(시설)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택 및 주거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탈원(시설)화의 추진 일정과 전략 및 자원 할당이 구체적으로 계획되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25. 최근 국회는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개정하였다. 그동안 심리사회적장애인은 보건의료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었고 복지서비스와 인권 중심 서비스의 대상으로는 간주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심리사회적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매우 협소하다. 다른 유형의 장애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에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반면, 심리사회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정신건강정책국에서 이루어진다. 장애인정책국에는 복지서비스만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정신건강정책국에는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으며 보건의료담당 부서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 그 결과, 심리사회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예산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 2023년 정신건강관련 예산은 총 4,432억원인데, 그 중 가장 많은 예산이 국립정신병원 운영(1,273억), 정신요양시설 운영(997억)에 투입되고 있다.³⁰ 실질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예산은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이 141억원으로 보건의료예산에 비해 비중이 적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1,171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주로 보건소에 위탁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³⁰ NMHC 정신건강동향 vol.30 2023년 정신건강 관련 예산(The Nation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ommission(NMHC). (2022). The Budget for Mental Health. Mental Health Trends, vol.30.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다른 장애 유형과 동등한 전달체계에서 다루지 않아 심리사회적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배제는 결국 심리사회적장애인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없어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사례 1

A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인원 31명 중 28명은 등록된 정신장애인이다. 그러나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장애인지원사업과 예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A 시설은 공공영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문의하였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³¹

사례 2

정신장애인 B 씨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지만, 지체장애, 지적·자폐성 장애를 위한 프로그램만 구비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직접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유형을 고려 받지 못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했다.³²

질문

- 1) 2021년에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며, 심리사회적장애인의 탈원(시설화)을 위한 로드맵 수립의 추진 일정은 무엇인가
- 2) 심리사회적장애인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자립하기 위한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하고 있는가

³¹ Kang et al. (2021). A Study on Law Amendments for the Recovery and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Mental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ul National University.

³² Kang et al. (2021). A Study on Law Amendments for the Recovery and Social Inclus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Mental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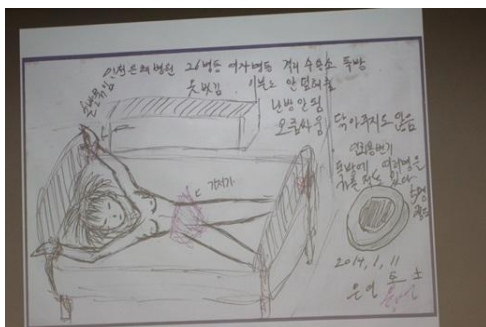
3) WHO Quality Rights에 기반한 지역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권고

- 1) 2021년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제외된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탈원(시설)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하게 수립하여 발표할 것
- 2)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정신과적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진: 폐쇄병동 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워 있는 C병원 환자들의 모습이다. 침대 없이 바닥 이불을 깔고 생활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리나 거리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 방에 여러 명이 붙어 생활하고 있다. 앉을 곳이 없어 병동 복도에 반쯤 기댄 채 누워 있는 환자도 있다. 병동 복도 중앙에는 커다란 박스들이 쌓인 채 방치되어 있다.



사진(원)³³: 대한민국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아무도 모른다-정신병원의 비밀’편. 27세의 청년이 정신병원 격리실에서 사지가 강박되어 있는 모습이다.

사진(오)³⁴: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가 소개한 정신병동의 현실을 그린 그림이다.



사진³⁵: 전남의 한 정신병원에서 당사자들이 순번을 정해 병실과 복도를 청소하였다. 일부는 식사 배식과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³⁶: 포항의 한 정신병원에서 직원이 손으로 당사자의 얼굴을 밀치고 있다. 이 밖에도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거나 의사 소견 없이 장시간 강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³³ 비마이너, 2016. 10. 27, 인권위 ”정신병원 격리·강박 최소화, 법령으로 강화해야” 복지부에 권고,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0>

³⁴ 에이블뉴스, 2016. 08.19, “정신병원 속 우리는 가축·마루타였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91>

³⁵ SBS뉴스, 2022. 04. 11, 환자가 스스로 병실 청소?...정신병원 ‘인권침해’ 논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09776

³⁶ 경북일보, 2023 08. 30, 포항 정신병원서 환자 상습 폭행 논란,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021>

B. 장애인 시설수용

a.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고문 및 학대

26. 장애인집단이용시설³⁷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가 55.9%로 가장 높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은 특히 중복 학대³⁸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을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간 학대 사례가 61.6%, 10년 이상 이어진 사례가 무려 27.3%로 다른 유형의 집단시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³⁹.
27. 시설 내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방임 때문이다. 지난 3년간(2018년~2021년 8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보고된 총 175건 가운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취한 경우는 81건(46.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개선명령(7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4건(53.7%)은 무형의 또는 약식 처분되었다.
28. 2022년, 한국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순차적 행정처분이 아닌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⁴⁰.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고,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린 후 3년 유예기간을 두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 고문 피해자들을 또 다른 시설로 옮기는데 그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시설의 폐쇄적 본질상 장애인이 고문과 학대의 위험을 계속 마주하는 것일 따름이다.
29. 이러한 정부의 방임과 반복되는 고문, 학대 속에서 장애인들은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지속적인 폭력, 방임, 학대,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고문 및 학대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가 곧 고문의 장본인인만큼⁴¹, 적극적이고 빠른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사례 1

2021년 5월, 경산시에 있는 장애인 시설 성락원에서 17세 아동 A 씨를 비롯한 장애인들을 물고문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고문해 온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150명 규모의 시설에서 가해자들과 피해자들 간의 즉각 분리 또는 지원은 없었다. 이때문에 사건 폭로 이후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시설 내에

³⁷ 장애인 집단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특수학교, 미등록 시설, 그 외 사회복지시설

³⁸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나 방임등의 학대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사례

³⁹ 보건복지부.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⁴⁰ 보건복지부. 202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⁴¹ 고문방지협약 일반논평 제2호 18문단

거주하며 추가 폭력을 당했다⁴². 그러나 성락원 사건에 대한 수사는 폭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이다⁴³.



2021년, 성락원 물고문 피해자 A씨에게 발생한 멍자국

사례 2

2020년 8월 142명의 시각·발달 중복장애인이 집단 수용된 R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제보되었다⁴⁴. 지자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9월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11월이 되어서야 피해자를 시설 내 다른 유닛으로 이동 배치하는 형식적 조치만 취했다. 2021년 2월에도 추가 피해가 발견되었으나 피해자들은 제보 후 6개월이 지나 분리조치됐다⁴⁵. 2016년부터 비리 등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2020년에도 시설에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권고에 그쳤다. 해당 시설은 아직도 운영 중이다.

⁴²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 경산시 전수조사도 비웃나? ‘물고문 사건’ 후 학대 반복!”, 2021.8.24.

<https://theindigo.co.kr/archives/23637> . 더인디고

⁴³ “경산시 장애인 학대시설 사건 수사 촉구 ‘삭발 단행’”, 2023.11.23.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03> . 에이블뉴스

⁴⁴ “여주 라파엘의집, 코로나 집단감염에 장애인 학대까지”, 2021.3.2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2>

⁴⁵ “여주·서울 라파엘의집에서 또 인권침해… 서울시는 ‘뒷짐’”, 2021.12.17.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31> 비마이너.



R 시설 거주인들 몸에 남은 학대의 흔적. 출처: 장혜영 의원실



R 시설에서 하루 3번, 30분 이상, 64건에 걸쳐 외상장애인을 묶어 놓은 기기. 출처: 장혜영 의원실

사례 3

2021년, 충북의 한 장애인 시설 원장이 지적장애인 B 씨를 폭행하는 CCTV 영상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원장은 B 씨 앞으로 나온 장애인 급여 등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원장은 B 씨를 폭행한 외에도 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는 등 생명에 위협적인 행위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이 B 씨를 때리고 학대한 이유는 '침대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는 것이었다. 병원 이송 당시 몸무게가 36kg였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섯달 뒤 사망했다⁴⁶.



충북 장애인 시설 원장이 침대에 누워있는 장애인 B 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SBS 뉴스

⁴⁶ CCTV로 드러난 공포의 20분... "장애인 학대는 습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88142



질의

- 1) 한국에서 장애인 시설 수용이 장기화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설 내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대에 처벌 현황 및 집단수용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긴급 구제 현황은 어떠한가?
- 2) 시설 내 학대 피해자를 또다시 다른 시설로 수용하는 조치는 재학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학대피해자에 대한 지역사회 긴급구제 조치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시설수용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권고

- 1) 고문 및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가해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대응을 방임하는 것이 곧 당사국을 가해 행위자로 간주한다는 규범을 인지하면서, 거주시설 내 고문 및 학대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피해자-가해자 즉각 분리, 피해자 전원조치 금지, 시설 내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라. 또한, 시설 내 학대 피해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재활과 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라.

b. 지역사회 제도 미비와 시설 수용 확대: 사실상의 강제 입소⁴⁷

30. 시설 수용은 고문에 해당하며, 유엔 인권 규범에 따라 즉시 탈시설 정책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⁴⁸,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방임하고, 나아가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인권 규범에 역행하고 있다.
31. 2022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거주시설은 1,535개소(28,565명)이며⁴⁹, 시설 평균 거주 기간은 18.96년에 달한다⁵⁰.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정책⁵¹에 따른 탈시설 지원대상은 2024년까지 600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담보 상태에 놓여 있다.
32. 더욱 심각하게, 정부는 일부 시설 거주 장애인 가족들의 반대가 있고,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2024년에만 총 35억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2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⁵²,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⁵³. 정부는 시설 수용 정책의 유지와 확장에 집중하는 반면, 지역사회 서비스를 마련하지 않아 장애인 가족(주로 부모)이 장애인을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⁵⁴.
33. 지역사회 지원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채 시설이 존재/확장하는 이상, 장애인은 사실상 강제로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다⁵⁵.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시설 거주인 67.9%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했다고 답했고, 자의로 시설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72%에 달했다⁵⁶.

⁴⁷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역시 2012년 러시아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문서를 통해 정신장애인 시설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 및 사망 사건을 협약 위반으로 간주한 바 있으며, 2021년 슬로바키아 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해 국가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⁴⁸ UN CRPD 제19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⁴⁹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⁵⁰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⁵¹ 보건복지부. 2022.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⁵² 제6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

⁵³ 한국 정부는 2024년에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으로 약 6,700억 가량을 책정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349억 4,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8.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

9. 시설수용을 지속하는데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국은 지역사회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 빈곤, 낙인을 시설 유지나 폐쇄 지연 정당화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⁵⁴ 24/7 support system needed for independence of disabled: experts. (2024.2.5.)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40205000743>. The Korea Herald

⁵⁵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 “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일 수 없다”

⁵⁶ 국가인권위원회. 2018.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34. 집단수용시설에 비자의적으로 수용된 장애인이 탈시설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이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가 및 후견인에게 위임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설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을 포함한 전문가의 자립역량 조사와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비로소 지역사회로 전환될수 있게 조건이 까다로워 졌으며, 이는 명백한 유엔 인권 규범 위반이다⁵⁷.

사례

장애인 탈시설 당사자들은 정부의 적극적 탈시설 정책을 촉구하며 시민단체인 ‘탈시설장애인연대’를 설립하였다. 박경인 탈시설장애인연대 대표는 서울시의 탈시설 정책 후퇴를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하였다.

“저는 미혼모시설에 태어나 23살까지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학대와 폭력에 맞서 살아왔어요.(...) 시설에서 나올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자립하는 걸 지원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제 탈시설한지 8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자립하고 제가 변한 게 있다면, 사람들 시선을 잘 의식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면 어떡할까. 이 사람이 지금은 나와 함께 있지만 또 떠나겠지.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기고, 내 권리에 대해 알게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좋은 동료들이 생기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퇴소 절차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많이 분노했어요. 다른 장애인들은 저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고도 시설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저는 서울시가 장애인의 죽음을 탈시설을 반대하는 핑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도 화가 납니다. 시설에서 죽은 건 나 몰라라 하면서,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시설에서 안 살았으니까 이렇게 죽은 거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서울시도 잘 알고 있듯이, 장애인들은 시설보다 자립생활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⁵⁷ UN CRPD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

“37.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손상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능력 평가는 차별적이며 개인별 요구사항 및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장벽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님,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죽고 싶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장애인단체의 집회가 정부청사가 모인 세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Beminor.com

권고

- 1) 시설 수용이 장애, 인종, 나이, 이주자 신분 등의 지위나 특성에 따른 차별에 기초한 행위이자 고문 및 학대 행위임을 인정하고, 시설 수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며 다음을 포함한 절대적 조치를 취하라.
 - a. 장애인, 아동, 노인 등에 대해 시설 수용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합리적 시기(**timeline**)에 따른 구체적 계획 및 예산을 반영하여 “탈시설로드맵”을 개선하라
 - b. 모든 유형의 수용 시설 탈시설 절차 및 조건을 간소화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 유형, 나이, 이주자 신분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 2) 수용 시설 피해자들의 구제 및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한 재활 수단을 포함한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에 대한 실효적 권리를 보장하라

c. 긴급 상황에서의 고문/학대: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사례

35.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체 시설 수용의 확진 및 치료에 관한 공식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2022년 3월, 보건복지부가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904명으로 입소인의 35.6%에 달해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인 25.9%를 넘는 수준이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모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2명 중 1명이 확진되었지만, 정부는 예방적/사후적 코호트격리, 면회/외출 금지 등 거주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정책만 도입했다.
36. 유엔 인권 규범에 기반한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국회에 발의된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은 시설 반대에 부딪혀 제정이 무산되거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에는 여전히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감염병 상황에서의 유일한 집단 수용 시설 대응책으로, 또다시 이러한 감염병이 반복된다면 장애인들은 시설 안에서 안전과 생명의 심각한 위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례 1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원은 발달장애인 117명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2021년 12월~2022년 1월 사이에만 총 7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신아원은 확진자와 비확진자 격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 내 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시설 내 확진자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신아원 집단 감염 사실을 비공식적 경로로 확인한 장애인단체들의 항의가 발생하자 시설 거주인들의 외부 접촉을 기만적으로 막았다⁵⁸. 정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 '예방적 코호트격리' 하여 시설 내 감염 확산을 예방했다고 하였으나, 신아원 사건은 코호트 격리 조치에 따른 경우 집단이 거주하는 시설 구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줬다⁵⁹.

사례 2

2023년, 충청북도에 있는 한 시설은 정부의 '예방적 코호트 조치'에 따라 금지됐던 요양시설 면회가 재개되면서 내부의 지속적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한 40대 여성 장애인은 3년만에 가족들을 만났는데, 온 몸에 멍이 들었고 무릎뼈도 골절되어 있는 상태였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해당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던 것이 드러났다⁶⁰.

⁵⁸ 시설 직원들은 거주인들에게 “핸드폰 전화 통화만 해도 코로나19가 옮을 수 있으니 전화를 해선 안 된다”고 기만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767744>

⁵⁹ Youtube video about the Shinawon case: “COVID-19 and Disability (1) Emergency Deinstitutionalisation”. (2021.12.23.). https://www.youtube.com/watch?v=04SLJga3_ZQ . Korean Disability Forum

⁶⁰ 장애인시설 상습 학대 정황..면회 풀리자 발각. (2023.4.10.) <https://www.youtube.com/watch?v=wfnMkKKFAL4>. MBC 충북

권고

- 1)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상황에서의 시설 내 고문 및 학대 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장애, 젠더, 나이, 인종, 이주 형태 등에 따른 분리 통계를 구축하라
- 2) 긴급 상황에서 시설 내 고문 및 학대의 우려를 증가시키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책을 폐지하고, 시설 밖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와 동등한 안전 대응책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접근을 보장하라

d. 젠더폭력 피해 장애여성

37. 장애가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시설 이용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 이용자의 11.3%(2960명), 지원시설 입소자의 56.2%(166명)가 장애인이다. 또 여성폭력 피해지원기관을 이용한 장애인 피해자의 85.7%는 정신적 장애인이다. 발달장애 74.2%, 신체장애 14.3%, 정신장애 11.5% 등이다⁶¹
38. 먼저 쉼터 입소 자체가 어렵다. 전국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7개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⁶². 입소 이후도 문제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정신적 장애를 겪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대체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증상을 보인다. 공격성 분노조절장애, 정신증적 증상, 인격장애 등도 나타난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시설 종사자들과의 약속이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위생관리나 자기관리 어려움 등으로 이어진다⁶³
39. 위와 같은 이유로 쉼터에서 조기 퇴소하거나, 쉼터 장기체류 후 기한 만료로 퇴소하는 장애 여성이 적지 않다. 쉼터 퇴소 후 장애 여성의 원가족이 해당 여성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장애여성은 갈 곳이 없다. 자립 주거지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장애여성은 장기 거주시설로 보내진다. 지역사회에서 살아온 사람이 범죄피해를 당하고 부족한 지원 때문에 오히려 시설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구조이다. 이는 탈시설화에 역행하며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배된다.

권고

⁶¹ 여성가족부, 2021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실적 보고

⁶² 경기일보, 인천 장애인 학대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 쉼터 없어 심리 지원 부족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17580207>

⁶³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피해 지원기관 내 정신적 장애 실태 및 피해지원 강화방안 연구, 2021

- 1) 젠더 기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장애여성이 시설 퇴소, 탈가정 이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형태의 주거 및 생계 보장 등 구체적인 지원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라
- 2) 특히 피해자 보호 센터에 있는 젠더기반 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지역사회 자립 및 완전한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라

C. 아동·청소년 탈시설

a. 시설보호아동의 인권 침해

40. 2020년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⁶⁴이 연이어 확인되던 가운데, 경북 포항의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개소(아동양육시설 246개소, 공동생활가정 512개소, 보호치료시설 12개소, 일시보호시설 8개소)에서 생활하는 거주 아동 13,094명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및 운영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였다.

사례

포항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한 명을 옥탑방에 가둬 생활하게 하고, 6명 중 5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장기간 아동학대에 노출 (한국일보 2020. 6. 17. 보도⁶⁵)

41. 조사 결과, 총 230명(정서학대 59.1%, 신체학대 26.5%, 중박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13.0%, 성학대 1.3%)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정서학대의 경우, 폭언과 욕설 뿐만 아니라, 격리시키거나, 타시설로 보낸다는 발언 등이 있어, 시설의 물리적 여건에 따른 한계와 종사자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를 알 수 있다.
4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진료와 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실태도 드러났다. 아동에 대한 직접 진료 없이 종사자 설명만으로 ADHD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20명(1.6%) 있었고, 약물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시설은 55개소로 조사되었다. 한편으로, ‘시설 내 부적응’을 이유로 ADHD가 진단된 경우(200명)도 있었는데, 집단생활시설은 학대와 가정해체 등으로 사실상 사회적 방임에 노출된 아동을 위한 적절한 양육환경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43.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년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결과에서도 “형식적인 아동자치회 운영, 불합리한 생활규칙(외출 제한, 휴대전화 사용 불가, 놀이 제한, 가구 배치 제한 등) 등”이 지적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시설 거주 아동은 외출, 외박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및 가정과의 교류는 더욱 어려워졌다. 시설보호아동의 ‘감금된 일상’, ‘달린 세상’은 자유박탈의 개념과 일치한다.

질문

⁶⁴ 5. 29. 경남창녕 아동학대사건, 6. 1. 충남 천안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⁶⁵ 한국일보, 2020. 6. 17. “독방에 갇힌 10살 아이… 가정폭력 아동, 또 학대한 보호시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0899059525>

- 1) 2021년 이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점검이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 2) 아동복지시설 외에 아동이 거주하는 여타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3)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점검은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4) 종사자 대상 아동인권교육, 역량강화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되고 있는가?

권고

- 1) 모든 유형의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인권 실태 점검과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라
- 2)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비롯해 역량 강화에 적합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수적 아동인권교육을 강화하라
- 3)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점검이 아동의 가정보호(가정보귀, 가정형 보호 배치/전환) 원칙에 조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라

b. 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및 약물 처방 오남용 문제

44.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을 시설⁶⁶에서 배제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거나 항정신성 약물복용을 남용하는 등의 학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⁶⁷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는 것 자체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정부의 뚜렷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⁶⁶ 이때의 ‘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거 목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형태의 거주 시설을 말한다.

⁶⁷ 연합뉴스, 2024. 1. 10. “쌍꺼풀 수술했다고 보육원장이 날 정신병원에 보내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126751505?input=1195m>

사례 1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였던 A씨는 2016년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 및 평소 행동을 이유로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병원 측에서 거절하였다. 해당 시설장은 가출, 흡연 등의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약 6개월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기도 하였다.⁶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 법인 이사장에게 원장 해임을 권고하고 해당 시설이 있는 지자체장에게 관리 및 감독 강화도 권고하였으나, 권고 불이행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⁶⁹

사례 2

그룹홈 시설장이 2022년까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5명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자행하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한 사실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⁷⁰

사례 3

부산 청소년 심리치료센터에 입소하여 ADHD 치료를 받던 아동에게 항정신성 치료 약물을 처방하게 하여 경찰과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⁷¹

질문

- 1) 시설 배치 아동의 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및 약물 처방 오남용 문제(약물 관리 실태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가?
- 2) 시설 아동의 자기선택권을 존중하지 않은 정신병원 비자의입원 및 약물 처방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3) 강제입원 또는 부적절한 약물 복용의 피해아동이 관련 피해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는가?

권고제안

⁶⁸ 뉴시스, 2018. 7. 19. “쌍꺼풀 수술 이유로 정신병원 보낸 아동시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80719_0000368293&clID=10201&piD=10200

⁶⁹ 노컷뉴스, 2018. 10. 4. “경찰, 정신병원 강제 입원·학대 의혹 보육원 원생 전수 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040252>

⁷⁰ 문화일보, 2023. 3. 21. “아동복지시설 60대 원장, 미성년자 5명에 폭언·폭행 등 학대 혐의로 檢 송치”,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2101039910226004>

⁷¹ KNN, 2024.5.8. “청소년 심리치료센터, 약물 과다 처방 논란”, <https://news.knn.co.kr/news/article/156896>

- 1)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및 약물 처방 오남용으로 인한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라.
- 2) 시설보호아동의 약물처방 실태, 정신병원 치료 등의 신체적·물리적 개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라.
- 3) 아동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및 상담 체계를 마련하라.

c. ‘탈시설’에 역행하는 자유박탈 실태

45. 대한민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보호대상아동 수는 약 4,000명 수준⁷²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12,981명⁷³ 중 9,439명(72.7%)이 아동양육시설에 있으며, 일시보호된 408명 중 381명이 시설에 배치되는 등 시설 중심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3월 시행된 즉각분리제도는 아동의 시설보호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⁷⁴ 아동복지시설 외에 청소년쉼터나 장애인거주시설에 배치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시설보호 비율은 96.6%에 달한 반면, 시설에서 가정보호로 조치된 아동은 13.8%에 그쳤다.⁷⁵
46. 심지어 정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사업은 보호종료 시점까지 시설에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례

2022. 8. 23. 사망한 A씨는 2020. 2. 시설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6호처분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전원되었다. 2021. 2. 중순 A씨의 6호 처분이 종료되자 원가정 복귀가 결정되었다. 18세가 되기 2주 전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중간종료아동이 되어 자립지원에서 배제되었다.⁷⁶

⁷² 통계청(2023)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중 “보호대상 발생 수”를 제시한 것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에 따른 아동 수와 “귀가 및 연고자 인도”된 아동 수를 포함한 수치이다. 2018년 4,538명, 2019년 4,612명, 2020년 5,053명, 2021년 4,521명, 2022년 3,756명을 기록했다.

⁷³ 2022. 12. 31.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10,312명) 및 보건복지부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현황(2,669명)의 수용인원을 합함.

⁷⁴ 2021년 학대신고로 분리된 아동의 72.8%가 시설에 보호되었고, 53.8%는 계속하여 시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⁷⁵ 감사원(2019), 감사보고서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

⁷⁶ 시사인 2022. 9. 29. “모두가 잘못 알고 있던 두 청년의 죽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88>

47. 위 A씨의 사망 이후 2024. 2. 9. 중도퇴소 아동⁷⁷에 대한 자립지원 규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거주한 경험이 없는 아동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15세에 시설을 퇴소한 경우에도 18세 이후에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어 3년간 지원이 부재하게 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시설 보호를 장기화하고, 가정 복귀, 가정형 보호로의 전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저해한다.

사례

한편, A씨 외에도 매년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종료 전후 자살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시설기반 자유박탈 조치가 아동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⁷⁸

48. 한편, 시설보호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6년 2.8% 대비 2022년 4.8%

(110명:2,290명=장애아동:보호대상아동)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12월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장애아동 수는 전체 시설 현원 13,914명 중 1,434명(약 10%)이다. 또한 2020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1,539개소 가운데 386개소에 장애아동 2,245명(중증장애인거주시설 774명, 지적장애인거주시설 640명,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33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시설보호 장애아동의 높은 비중을 알 수 있다.⁷⁹

49. 현 정부는 당초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나, 현재는 이를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으로 수정하는 등 ‘탈시설’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아동의 ‘탈’시설과 시설보호의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질문

- 1) 아동의 시설보호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 2) 즉각분리제도에 따른 시설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3) 시설보호 장애아동에 대한 일관된 보호체계가 수립되어 있는가?
- 4)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계획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권고

- 1)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에 시설보호는 예외적인 경우 일시보호가 원칙이며, 최후의 대안양육 수단임을 명시하고,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아동양육시설에서의

⁷⁷ 만 18세가 되기 전 시설을 퇴소한 아동

⁷⁸ 보건복지부(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⁷⁹ 국가인권위원회(2021. 12.),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47쪽.

장기보호를 방지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특히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지원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 2) 정부의 시설 중심의 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고문방지협약 제12조와 제3조에 입각해 과거 시설 거주에 따른 피해 배·보상 절차를 로드맵에 반영하라.
- 3) 당사국은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시설 입소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정보호로의 전환, 국가 주도의 입양정책을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 4)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도입하라.

d.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시설화 강요 등 비인도적 처우

50.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초(4~6학년), 중, 고등학생 중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5,741명으로 추정되며,⁸⁰ 여성가족부는 2022년 위와 동일한 범위의 학생 중 100명당 3.6명의 청소년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⁸¹ 그러나 이는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 밖 비율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 규모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경찰청의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3,133명이나, 청소년쉼터 입소자수 21,475명에서 유추하기도 하였다.⁸² 이처럼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나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통계의 부재는 이들을 위한 정책의 부재로 연결된다.
51. 가정 밖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중장기 청소년쉼터 같은 거주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에서 배제된다.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아동학대나 방임 등 가정 내의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⁸³ 돌아갈 가정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시설화가 유일한 선택지로 강제된다. 그러나 현재의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외보호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가정 밖 청소년은 배제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학대나 폭력, 방임 등으로부터 탈출하여 가정 밖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지만 탈시설 논의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52.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긴급주거지원이나 주거급여,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이로 인해 가정 복귀와 거주시설을 거부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모텔, 지인의 집 등에서 머물게 되며, 거리에서 노숙한 경험이 있는

⁸⁰ 국회입법조사처, 홀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 넘어(2021), 1쪽. 여성가족부의 2020 청소년통계(2021) 중 가출 경험이 있는 초(4~6학년), 중, 고등학생 중 2.9%를 당시 학생 수 399만1089명을 적용해 추산한 숫자임.

⁸¹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통계(2023), 33쪽.

⁸² 용혜인의원실, 2022년 국정조사 자료.

⁸³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기간 이용자 생활실태조사(2022): 가족과의 갈등 69.5%, 가족의 폭력 28%, 가족의 빈곤 4.9% (복수응답)

청소년도 29.8%에 달한다.⁸⁴ 거리에서의 경험은 청소년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영양 있는 식사를 포기하거나 질병에 대한 의료적 조치를 포기하고,⁸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나 성착취를 당할 위험이 있다.

사례⁸⁶

2022년 8월 창원에서는 헬퍼를 구하는 14살 여학생을 만나 성폭행한 남성이 검거되었다.

의정부에서는 헬퍼로 접근해 13살 여학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헬퍼 사이트에서 만난 여학생을 차량절도 범행에 끌어들이는 사건도 있었다.

53. 청소년 대부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가정의 위기와 갈등, 폭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탈가정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 밖'에 방치되는 거리 청소년은 국가의 제도적 폭력에 노출된 것과 다름없다(CRC/C/GC/13, para.32). 한국 정부는 거리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켜 폭력이나 착취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하거나 이를 방관한 역사가 있다. 현 정부는 여전히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에 방치함으로써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

질문

- 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 파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보완 계획은 무엇인가?
- 2)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고 있는가?

권고

- 1) 가정 밖 청소년이 국가의 보호·지원체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인프라를 정비하라.

⁸⁴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기간 이용자 생활실태조사(2022), 78쪽.

⁸⁵ 국가인권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2023), 192쪽, 207쪽.

⁸⁶ 연합뉴스TV, 2023. 6. 9. "'도와줄게' 가출 청소년 노리는 '검은 헬퍼'",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30609010000641>

결론 및 권고

아동의 시설보호가 만연한 한국의 실태와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아동학대 사례를 보고하여, 아동에 대한 차별적이며, 부당한, 비인도적인 일체의 대우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 국가의 의무 미이행을 지적한다. 한국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한 광범위한 ‘탈시설’ 정책을 채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회복을 지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1)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
- 2)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의 가정환경에 대한 권리 및 주거권 보장, 가정위탁 보호로의 전환을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 3)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을 작성함에 있어 시설보호는 일시보호가 원칙이며 최후의 대안양육 수단임을 명시하고,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장기보호를 방지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 4)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가정환경 회복, 주거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자원과 예산 및 인력의 규모를 증대하라.

D. 이주민 시설 수용

a. 이주 구금

- 객관적 검토 절차가 없고, 구금 기간의 상한이 없는 대한민국의 이주 구금 제도

54. 대한민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고 있다.⁸⁷ 또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구금으로 이어진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해야 하며, 엄격한 규율을 강요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제도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것이고, 이들은 언제든지 구금 대신 출국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에는 ‘구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한 없는 구금이 자의적 구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아동의 구금 제한 및 구금의 상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 영유아도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관행이 있다.
55. 대한민국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이주 구금 제도에는 사법부 등 독립된 주체에 의한 판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구금 기간의 상한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이주구금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⁸⁸을 내렸는데, 법무부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⁸⁹ 하지만 이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개악안으로, (1) 구금의 상한을 연장 시 최장 36개월로 정하고 (2) 무한정 재구금을 허용하고 있으며, (3) 중립적 심사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를 신설하여 구금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인권시민사회 단체 등은 입법예고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⁸⁷ Immigration Act, Article 63 (Detention of Persons Subject to Deportation Orders, or Release from Detention) (1) If it is impossible to immediately repatriate a person subject to a deportation order ou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person has no passport or no means of transportation is available, or for any other reason,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may detain the person in any detention facility until he or she can repatriate the person.

⁸⁸ 2020Hun-Ka1, 2021Hun-Ka10 (consolidated) Case on Detention of Deportees with No Upper Time Limit, On March 23, 2023, the Court, in a 6-to-3 opinion, held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Article 63, Section (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allows a person under a deportation order to be detained while not setting an upper time limit of the detention. It explained that the provision violates both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nd thus infringes the physical freedom of the detainee. <https://english.ccourt.go.kr/site/eng/ex/bbs/List.do?cbldx=1143>

⁸⁹ 법무부공고 제2024-140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 April 2024,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7530?isOgYn=Y&opYn&>

56. 구금의 필요성 및 취약성을 고려하는 절차가 없어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구금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동, 장애인, 임산부, 아동을 동반한 부모, 난민 등이 모두 구금되고 있다. 심지어 (1)무국적자, (2)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 (3)무국적자 등 강제퇴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장기간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⁹⁰

- 이주구금시설에서 남용되는 독방 구금과 신체 구속 장비 사용

57. 뿐만 아니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자해 및 타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경우’에 특정인을 격리하거나 경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문⁹¹을 활용하여 사실상의 징벌로써 유형력을 활용하고 있다.

58.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공무원들이 수용자를 고문하였던 이른바 ‘새우깍기’ 고문사건⁹²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법무부령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규칙에서는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신체 구속 장비의 종류를 크게 늘리고 사지를 결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자체로 우려가 크다.⁹³ 독방 구금과 구속 장비 사용의 구체적인 요건, 방법, 절차는 모두 비공개 내부지침에 규정되어 있을 뿐, 공개되지 않아 통제가 불가능하다.

사례

독방 구금 및 신체 구속을 활용한 고문

2021년, 모로코인 남성 ‘AB’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그는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병원 진료를 요구하며 직원들과 언쟁을 벌인 뒤 독방에 갇혔고, 손발이 뒤로 묶이고 머리에는 헬멧이 씌워진 채 움직일 수 없는 이른바 ‘새우깍기’ 고문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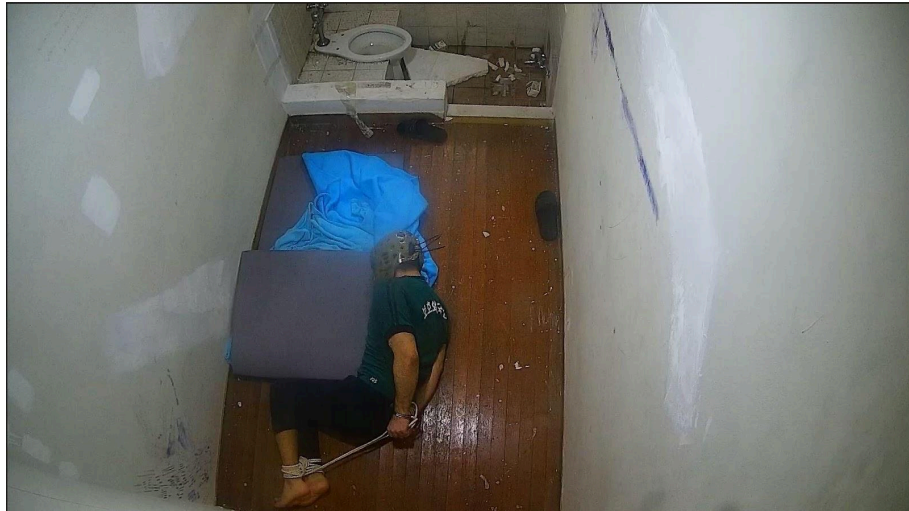
⁹⁰ Voice of America, South Korean Activists Urge Better Treatment of Asylum-seekers, 2 January 2022, <https://www.voanews.com/a/south-korean-activists-urge-better-treatment-of-asylum-seekers/6378557.html>

⁹¹ Immigration Act Article 56-4 (Exercise of Coercive Force)

⁹² The Korea Times, Migrant human rights groups denounce excessive use of force at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29 September 2021,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08/113_316207.html

⁹³ Hankyoreh, Civic groups condemn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protective gear as “torture devices”, 22 June 2022,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48108

이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및 고문방지협약 위반임을 인정하고,⁹⁴ 법무부도 인권침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⁹⁵ 그러나 이 사건의 가해자인 법무부는 오히려 2021년 5월부터 4~5개월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 또한 2021년 9월에는 피해자의 사진 십여 장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가혹행위의 원인이 피해자라 주장하였다.⁹⁶



(사진 : 2021년 ‘새우깡기’ 사건 당시 화성외국인보호소 CCTV 사진)

- 아동의 이주 구금

59.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한국국적이 없는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아동 구금에 관한 유일한 법조문은 제56조의3 “19세 미만인 사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뿐이다. 법무부 훈령인 외국인 보호규칙 제4조에서 외국인 보호시설의 장은 구금 대상 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어린이가 구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구금된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발령하면서 14세

⁹⁴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520600 외국인보호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결정, 3 December 2021, <https://case.humanrights.go.kr/ezpdf/customLayout.jsp?bencdata=L25hcy9XZWJBcHAvZmlsZXMvZGViaXNfZGV0YWlfZmlsZS8yMDIzIzFwLzE0M0NTQwN0I4IEMzQzUuODUxMy0wQkQ5IEM0ODBCNUUwQU2UR55wZGYmZmFsc2UmZmFsc2UmZmFsc2U=>

⁹⁵ Middle East Eye, Moroccan migrant left in ‘torture-like’ conditions in South Korean detention centre, 3 November 2021, <https://www.middleeasteye.net/video/moroccan-migrant-left-torture-conditions-south-korean-detention-centre>

⁹⁶ 법무부 보도자료,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29 September 2021,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3&fn=temp_1632905387021100

미만의 아동을 같이 구금하게 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달리 자녀의 보호에 대한 대안이 없어 사실상 아동을 강제로 함께 구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⁹⁷

60.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구금 대상이 아닌 아동이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일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13명, 2021년 12명, 2020년에는 16명의 3세 미만 아동이 외국인보호시설에 구금되었다.⁹⁸ 외국인 보호규칙은 구금된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 등에 대해 일부 추가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최근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마저도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설사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특별한 보호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구금 자체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는 없다.

사례

아동 구금

2023년 4월, 구금 당시 2세 10개월이었던 몽골 아동이 이 미등록체류를 이유로 부와 함께 수원출입국 지하 보호실 등에 구금되었다.⁹⁹ 구금 과정에서 아동의 부는 아동을 돌볼 위탁기관이나 아동의 모를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구금된지 3일 차에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은 불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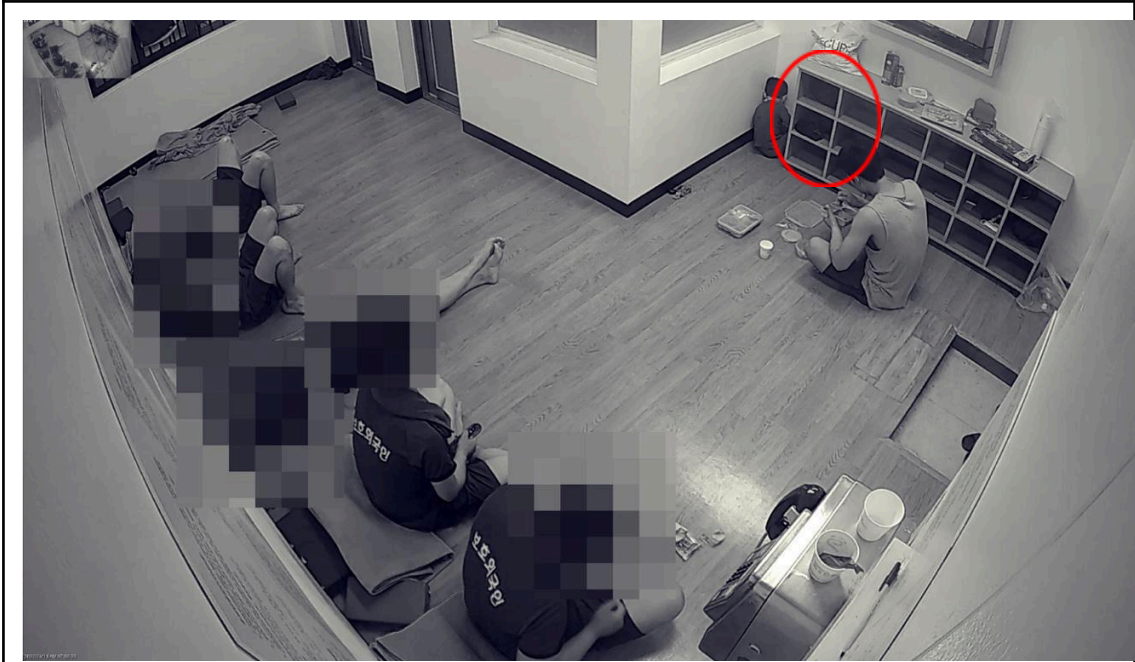
열악한 구금환경으로 인해 해당 아동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아동의 아버지는 구금된지 17일차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출입국관리 직원들은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가족을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줄 알았던 아버지는 짐도 챙기지 않았고, 정부 당국은 짐도 없이 나선 아동과 부를 데리고 공항으로 가 사전 통보 없이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아동은 몽골로 돌아간 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⁹⁷ 26 children under 8 years of age have been detained at immigration detention unit or center throughout Korea from 2013.1 to 2015.6. Among them, a 3-year-old boy a 2-year-old girl were detained for 30 days and 81 days respectively. Kim, Jongcheol, Toward Elimination of Detaining Children of Migrants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Apil, World Vision, 2015, 5

⁹⁸ The statistic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June 2023.

⁹⁹ The Korea Herald, Minor party slams ministry for detaining Mongolian 3-year-old, 14 June 2023,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614000691>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 CCTV 사진 - 어른 식사를 거부하고 구석에 숨어있는 아동의 모습)

질문

- 1) (1) 독립된 기관의 정기적 검토와 같은 절차와 (2) 구금 상한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금 기한의 상한은 어떻게, 구금 개시 및 연장의 주체가 누구인지
- 2) 이주구금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구금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3) 이주구금 시설 내 고문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처벌되었는지,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 4) (1)18세 미만 아동의 구금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지 (2)구금이 결정될 때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는지, (3)부모가 구금된 아동을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권고 제안

- 1) 당사국은 구금이 최단기간 동안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
- 2) 당사국은 이주구금 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 3) 당사국은 이주구금 시설 내 고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 및 가해자에 대한 형사 기소 (2) 재발 방지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
- 4) 당사국은 18세 미만 아동의 이주구금을 전면 금지하고, 외국인 아동을 양육해야 할 보호자도 원칙적으로 구금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b. 출입국항에서의 구금

-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불회부 처분’

61. 대한민국은 ‘공항에서 난민신청하는 경우’는 일단 입국하여 난민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회부심사’라는 일종의 예비심사를 한 번 더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 자체로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회부하겠다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출입국항 절차에서 실질심사가 진행되어 절반 이상의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불회부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⁰⁰ 2019년에는 공항 난민신청자들 중 7.5%만이 난민심사를 받을 기회를 얻었고, 최근 5년간은 35.2%만이 난민심사의 기회를 얻었다.¹⁰¹
62. 불회부처분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이의 방법이다. 그러나 소송절차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난민신청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법률 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는 거의 불가능하며, 극소수의 프로보노 변호사들을 통해 아주 드물게 진행될 뿐이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장기간 소송을 거쳐야 하고, 열악한 시설에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출국을 하기도 한다.

사례

- 출입국항 장기 구금

2020년 2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 난민신청자는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남성은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입국을 할 때까지 423일 동안 공항에서 지내야 했다.¹⁰²

¹⁰⁰ 면접 진술 중에 언급한 사건의 날짜가 틀려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불회부처분을 한 예,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며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불회부처분을 한 예, 내전 중인 국가로부터의 난민에 대하여 내전이 진행중인지 여부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다며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불회부처분을 한 예 등이 최근 보고되었다.

¹⁰¹ 난민인권센터, 한국사회의 난민인권 보고서, 2024. 3.

¹⁰² Korea Joongang Daily, Asylum seeker finally sees the sun after 423 days in Terminal 1, 18 April 2021, <https://v.daum.net/v/20210418153603436>

- 공항 구금시설의 불충분한 식사와 주거 환경

63. '불회부 처분'을 받아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등 공항에 장기간 머물게 되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리하는 '출국대기실'에서 지내야 하며, 주거시설 등의 대책이 없다. '불회부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최소 3개월, 최장 14개월동안 공항에 억류되어 있어야 했다. 상당한 숫자의 장기 대기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의 출국대기실은 식사, 위생 등에 관한 예산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식사는 현재 하루 두 차례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수량이 부족하면 제공되지 않기도 한다.
64. 출국대기실에는 따로 취침 시설이 없는데, 단체로 평상 위에서 모포를 덮고 취침을 하고 있다. 그마저도 공간이 매우 좁아 사람이 많을 경우 쉽게 과밀한 수용의 위험이 있다.



(사진: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난민신청자¹⁰³)

-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한 출입국항 구금

65. 균형잡힌 식사의 제공이나 위생적인 환경에서의 대기가 불가능한 가운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아동, 임산부, 장애인도 구분 없이 모두 구금, 방치되고 있다.
66. 출국대기실은 남녀의 구분이 있을 뿐, 아동이나 아동 동반 가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들도 어른들과 뒤섞여 지내야 한다¹⁰⁴. 아동은

¹⁰³ CNN International Facebook, Syrian refugees stuck in limbo at Seoul Airport, 1 June 2016, <https://www.facebook.com/cnninternational/videos/syrian-refugees-stuck-in-limbo-at-seoul-airport/10154179783609641/>.

¹⁰⁴ For example, in the State Party report and corresponding annex, the government disclosed that only one "family room lounge" was set up in the entire country (Incheon Airport). Six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19 of the Convention Pursuant to the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Tbl. 15 CAT/C/KOR/6/Annex (12 July 2021).

영양과 건강의 위험 속에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되고 있다.

사례

취약한 사람에 대한 공항 구금

2018년-2019년 앙골라 출신의 난민신청자 부부가 4명의 자녀(당시 8세, 7세, 7세, 5세)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287일간 노숙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은 샤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공중화장실에서 씻어야 했으며, 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생필품, 식사도 제공받지 못해 24시간 불이 켜 있는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해 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과 보호권, 사생활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사진 :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앞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공항난민 일가족의 모습¹⁰⁵)

질문

- 1) 고문방지위원회 제3-5차 최종견해에 관련하여(41-42문단), 난민법 시행령 제5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지
- 2) 고문방지위원회 제3-5차 최종견해에 관련하여(41-42문단), 출입국항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를 위하여 소송이 아닌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 3) 출국대기실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¹⁰⁵ The Hankyoreh, Angolan family stuck in Incheon Airport for six months as they seek refugee status, 21 June 2019,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898849.html

- 4) 출입국항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항 밖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권고 제안

- 1) 당사국은 출입국항에서의 회부심사 절차를 남용하여 공항에 난민신청자를 장기구금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 2) 당사국은 공항에 억류된 사람들이 최단기간 동안만 구금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간다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 3) 당사국은 불가피하게 공항에서 장기 대기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항 밖에 별도의 주거시설을 마련하라